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1

# 청 주 지 방 법 원

##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15구합10327 재산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5. 7.

판 결 선 고 2015. 6. 4.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4. 7. 25. 한 재산세 16,047,190원 및 지방교육세 2,057,33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5,215,650원 및 지방교육세 1,950,7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4. 9. 10. 한 재산세 27,375,970원 및 지방교육세 3,230,33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25,957,390원 및 지방교육세 3,062,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1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4. 제정·공포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해산된 한국지역난방 주식회사(한국지역난방 주식회사는 1985. 11. 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48.34%), 에너지관리공단(26.04%), 서울특별시(25.62%)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1992. 5. 23.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2. 3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34.55%), 한국전력공사(19.55%), 에너지관리공단(10.53%), 서울특별시(10.37%) 등이다.

나. 피고는 구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2012. 4. 6. 충청북도 청주시 조례 제2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한편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2.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 12. 31.까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1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정하였고, 이후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은 위 감면비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관할구역 소재 건축물(업무용 건물 및 가스관, 수도배관 등 구축물)에 대하여 감면 없이 2014. 7. 25. 재산세 16,047,190원 및 지방교육세 2,057,330원을, 2014. 9. 10. 재산세 27,375,970원 및 지방교육세 3,230,3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4. 12.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주식의 거래가 자유롭고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며 원고의 주주는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원고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1

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는 문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률 규정에서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을 명시할 때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는 지방세 감면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감면비율만 축소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금액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동법 제85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3호가 정하는 감면비율인 100분의 50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비율인 10.37%를 각각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 2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각 문언을 대비하여 보면 같은 조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반드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과 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1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발행한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고, 원고의 주주는 이익을 배당받고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원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④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당한 세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 금액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동법 제85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3호가 정하는 감면비율인 100분의 50과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인 10.37%를 각각 곱한 금액(감면액)을 공제한 액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아래 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아 래 -

(단위: 원)

| 처분일자 | 부과금액 | | 정당한 세액 | |
|---|---|---|---|---|
|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1

| | | | | |
|---|---|---|---|---|
| 2014. 7. 25. | 16,047,190 | 2,057,330 | 15,215,650 | 1,950,730 |
| 2014. 9. 10. | 27,375,970 | 3,230,300 | 25,957,390 | 3,062,910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인형준

판사 정혜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1

# 관계 법령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1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출자는 현금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0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제44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44조, 부칙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상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주)한난"이라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사가 포괄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한난은 이 법에 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1

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주)한난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주)한난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구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2012. 4. 6. 충청북도 청주시 조례 제2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